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10. 10 훈령 제264호  
개정 2010. 12. 15 훈령 제29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2. 8. 30 훈령 제31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6. 9. 26 훈령 제373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운  
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6>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15>

1. “각종 위원회”란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위원회·심의회·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실·과장 및 동장”이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 하는 실·과장 및 동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령등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광명시의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여성위원 위촉 의무비율) ① 실·과장 및 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무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등의 제·개정(위원위촉 자격기준 개선 등)을 통하여 의무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위원의 위촉협의) ① 실·과장 및 동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성정책부서(이하 “협의부서”라 한다)와 협

광명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5>

② 협의부서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5, 2012. 8. 30>

③ 협의부서는 실·과장 및 동장이 여성위원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위원 위촉 의무비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일 현재 이미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 임기 만료·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다시 위촉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15 훈령 제29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⑳ 광명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과 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가족여성과장”으로 한다.

㉑ 부터 ㉷ 까지 생략

부칙 <2012. 8. 30 훈령 제31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6. 9. 26 훈령 제373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